

#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담당예정 직무
민원처리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4명	2년 (주당35시간)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소에 접수된 민원·제안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해당부서(기관)에 분배 및 조정</li> <li>- 응답소에 접수된 민원·제안의 답변 및 부서처리과정 이력관리·모니터링</li> <li>- 응답소 민원 이슈·동향 분석 및 민원 유형·부서 분배 기준 정립</li> <li>- 기타 응답소 운영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li> </ul>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을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경력)에 따른 응시자격요건 적용

구분	응시자격요건(경력)
민원처리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b>◆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b>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의 민원(분배·조정·처리 등)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해당직급 보수범위 내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9급(상당) (주35시간 환산)	50,039 (43,784)	-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2. 7(목) ~ 12. 11(월), (3일간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장소 : **서울시청 민원담당관(신청사 4층, ☎ 2133-6464)**

· 소재지 : (우편번호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민원담당관 민원기획팀 채용담당자(☎ 2133-6464)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 접수 마감일까지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서류 분실 방지 목적)
-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시험공고	2023.11.28(화)	시 홈페이지 공고
응시원서 접수	2023.12.7.(목)~12.11(월)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12.15(금)	시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2023.12.20(수)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3.12.22.(금)	개별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 인사위 일정에 따라 확정	개별안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안내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에서 별도 설정·시행

###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6. 제출서류

###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 응시원서(첨부 1) 1부

- 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마감 5,000원)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또는 첨부(납부확인서)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 판매장소 : 서울시 열린민원실(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층 ☎02-2133-7908)

※ 일부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나, 사전에 발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 자치구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 온라인 구입은 ETAX홈(etax.seoul.go.kr)에서 절차(신고납부 → 서울시 채용수수료)에 따라 하면 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입증지 구입 안내 ◆

##### 1. 직접 방문 발급

- 직접방문 :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또는 가까운 구청 재무과(방문전 사전연락후 방문)

▶ **서울시 열린민원실(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층)** : 현금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

\* 현금일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방문시 필히 지참)

\* 카드일 경우에는 결제 후 매출전표 발행(카드사용/가명점용), 부착

▶ 구청 재무과 : 카드만 사용 가능

##### 2.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 발급 : 시민이 직접 이택스 내 「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 메뉴에서 구매 가능

▶ 성명, 주민번호, 금액(5천원,7천원,만원 중 선택) 입력 후 결제 구매(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

◆ 메뉴위치 : [ETAX(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

▶ 납부확인서는 1회만 발급 가능, 복제방지 및 원본확인용 발급번호 표기됨

◆ 메뉴위치 : [ETAX(etax.seoul.go.kr) 홈 > 납부(영수증)확인 > 신고납부확인  
납세번호 클릭 > 하단 납부확인서 인쇄]

※ 신청사 1층 공사 일정에 따라 수입증지 구입장소(서울시청 열린민원실) 위기 변경 가능

#### ○ 이력서(첨부 2)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 자기소개서(첨부 3) 1부

-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 5)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 1부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8]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인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①, ②모두 제출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개 선택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국세청 홈택스)

-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동그라미 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동그라미 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website interface.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민원증명' (Public Inquiry), '조회/발급' (Search/Issuance), '민원증명 신청/제출' (Public Inquiry Application/Submission), '신고/납부' (Reporting/Payment), '상담/제보' (Consultation/Report), and '세무대리/납세관리' (Tax Agent/Tax Management). The '민원증명' section is active, displaying a list of services: '민원증명' (Public Inquiry), '민원증명 원본확인 (수요처 조회)' (Public Inquiry Original Confirmation (Demand Search)), '문서위변조방지 및 처벌안내' (Document Tampering Prevention and Punishment Guide),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 (Public Inquiry Processing Result Search), and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Public Inquiry Waiting Person Search). The '민원증명' service is highlighted with a red circle and the number '1'. The '민원증명신청' section is also visible, listing services like '사실증명신청' (Request for Fact Confirmation), '소득금액증명' (Income Statement), '납세증명서(국세환납증명)' (Tax Payment Certificate (National Tax Payment Confirmation)),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Payment History Confirmation (Tax Fact Confirmation)), '소득금액증명' (Income Statement), '국세납세증명(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카입증))' (National Tax Payment Confirmation (Individual Comprehensive Asset Management Account (K-IP))),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Value-added Tax Taxable Standard Confirmation),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Value-added Tax Exempt Business Income Confirmation), '표준재무제표증명' (Standard Financial Statement Confirmation),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Confirmation of Income Tax Deduction for Pension Insurance Premiums, etc.),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턴사업장 증명' (Confirmation of Application of Business Unit Taxation), '모범납세자증명' (Model Taxpayer Confirmation), '국세납세증명 조회(정부관리기관용)' (National Tax Payment Confirmation Search (Government Management Agency Use)),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Confirmation of Eligibility for Labor (Child) Incentive Allowance),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Confirmation of Income (Confirmation of Eligibility for Young People Preferred Housing Rental Deposit Comprehensive Savings and Special Taxation)), and '취업후학자금상환·상환금부사실증명서' (Confirmation of Loan Repayment after Employment/Confirmation of Loan Repayment Amount).

##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첨부 8) 1부
-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담당관 인사담당(김미진 ☎ 2133-6464)

## 직무기술서(서식)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민원처리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4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b>주요업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소에 접수된 민원·제안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해당부서(기관)에 분배 및 조정</li> <li>- 응답소에 접수된 민원·제안의 답변 및 부서처리과정 이력관리·모니터링</li> <li>- 응답소 민원 이슈·동향 분석 및 민원 유형·부서 분배 기준 정립</li> <li>- 기타 응답소 운영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li> </ul>
-------------	--

<b>필요역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통역량)</b>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li> <li>○ <b>(직급별 역량)</b> 상황인식/판단력, 2개 이상 기관(부서)가 관련된 민원·제안사항 분배를 위한 조정능력과 의사소통능력</li> <li>○ <b>(직렬별 역량)</b> 민원·제안 운영실태 및 주요민원 동향 파악을 위한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li> </ul>
-------------	--

<b>필요지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원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li> <li>○ 온라인 시스템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응답소)”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전산시스템 활용 능력</li> <li>○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각 부서, 자치구 및 산하 투자출연 기관 업무에 대한 사전지식</li> </ul>
-------------	--

<b>응시자격요건</b>	<b>경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의 민원분배·조정·처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li> </ul> </li> </ul>
---------------	-----------	--

<b>우대요건</b>	해당없음
-------------	------